

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주철현의원 대표발의, 의안번호 제6416호) 검 토 보 고

I. 주요내용

- 수중레저활동 기본계획 중 안전관리 분야의 경우 해양경찰청장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수립·시행하도록 함(안 제4조).
- 수중레저활동 안전관리 사무, 수중레저사업 등록 사무 등을 해양수산부에서 해양경찰청으로 이관하고(안 제10조·제15조·제18조·제19조·제23조·제24조~제28조), 수중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등 일부 사무에 대해서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3조제2항·제14조·제22조·안제32조제3항).

II. 검토의견

1. 기본계획 수립·시행 주체의 명확화 필요(안 제4조)

- 안 제4조는 수중레저활동 기본계획 중 안전과 관련된 분야는 해양경찰청장이 수립하도록 하고 있는데,

현행법 제4조제3항, 제4항 및 제6항에 의한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, 통보 등은 기존과 같이 해양수산부장관이 담당하게 됨.

- 다만, 안 제4조와 같이 안전과 관련된 분야는 해양경찰청장이 “수립·시행한다”고 규정할 경우, 기본계획의 수립·시행 주체가 해양수산부장관과 해양경찰청장으로 되어 두 개의 기본계획이 수립·시행되는 것처럼 오인될 여지가 있으므로, 하나의 기본계획이 수립·시행됨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보임.

<안 제4조에 대한 수정의견>

현행	개정안	수정의견
제4조(수중레저활동 기본계획)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마다 수중레저활동 기본계획(이하 “기본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 <u><단서 신설></u>	제4조(수중레저활동 기본계획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, <u>다만,</u> <u>안전과 관련된 분야는 해양경찰청장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기본계획을 수립·시행한다.</u>	제4조(수중레저활동 기본계획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, <u>다만,</u> <u>안전과 관련된 분야는 해양경찰청장과 해양수산부장관이 협의하여 기본계획을 수립·시행한다.</u>

2.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마련 필요

- 현행법 제32조제3항은 과태료를 해양수산부장관이 부과·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, 안 제32조제3항은 이를 ‘해양경찰청장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부과·징수하도록 하려는 것임.
- 개정안은 행정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와 수중레저활동 기본계획 및 수중레저 안전관리규정에 관한 경과조치만을 두고 있을 뿐, 별칙인 과태료에 대해서는 경과조치를 마련하고 있지 않은데, 과태료 부과 처분은 행정처분이 아니라는 점에서 경과조치 해당 여부가 불명확함.¹⁾

과태료의 부과·징수 주체가 변경되면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의 징수 주체에 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, 이에 대한 경과조치를 신설할 필요가 있음.

<개정안 부칙에 대한 수정의견>

개 정 안	수 정 의 견
부 칙 <u><신 설></u>	부 칙 <u>제5조(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부과·징수한 과태료는 제32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해양경찰청장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부과·징수한 과태료로 본다.</u>

1) 대법원은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“과태료의 부과 여부 및 그 당부는 최종적으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한 절차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한다고 할 것이므로, 그 과태료 부과처분은 행정청을 피고로 하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”고 판결함(대법원 1995. 7. 28. 선고 95누2623 판결, 대법원 2012. 10. 11. 선고 2011두19369 판결).

3. 기타 사항

- 그밖에 개정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, 법 체계에 맞추어 부칙의 순서를 조정하고, 조사를 추가하는 등 경미한 체계 및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이며, 자세한 수정사항은 주서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(전문위원 김 성 완)